

부천시도시계획시설(교통광장)결정안에대한의견안심사보고

1. 심사보고

가. 제안일자 : 2001. 12. 6

나. 제출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01. 12. 6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92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(2001. 12. 14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도시과장 권병준)

□ 제안이유

- 관내 오정구 오정동 일원 오정대로의 교통운영 및 통행되는 차량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오정구청을 이용하는 민원인의 편리 및 통행안정에 만전을 기하고자
- 중로1류16호선의 종점부를 당초 오정동 103-10번지에서 오정동 119-39번지로 연장 축소하여 선형변경하고 중로1류16호선 종점부에서 오정동 117-3번지 일원의 오정동대로와 연결하는 오정대로 접속부에는 오정대로가 주간선도로임을 감안하여 교통광장을 신설, 입체교차로를 설치하여 원활히 차량통행을 도모코자 급회 도시계획결정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견을 듣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- 관내 오정구 원종동 166-4번지(대로2류5호선 : 원종로)~오정동 103-10번지(국도6호선 산업길) 구간을 연결하는 도로(중로1류16호선)에 대해 종점부 위치를 오정동 119-39번지로 연장 축소하여 오정대로와 연결하며,
- 급회 변경계획인 중로1류16호선의 종점부에서 오정동 117-3번지 일원의 오정대로 연결구간은 교통광장을 신설, 입체교차로를 설치하여 주간선도로인 오정대로와 접속하고자 도시계획시설(광장 : 교통광장)을 신설코자 함

□ 관련근거

-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라목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중로1류16호선의 종점부를 당초 오정동 102-10번지에서 오정동 119-39번지로 연장을 축소 선형변경 하고자 하는데 당초 시설결정에 포함되었다가 축소로 제척되는 토지 소유자의 의견은 청취하였는가?	○ 주민들이 변경결정을 원했던 사항으로 축소 폐지가 되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음
○ 당초 시설결정안대로 사업시행시와 급변 변경안대로 사업시행시의 사업비 차이는 있는가?	○ 당초 사업비는 160억원이며, 변경안대로 사업비는 140억원으로 20억원 정도 사업비가 절감됨

○ 교통광장 신설보다 인천이나 서울의 도로 처럼 5거리로 시설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?

○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서는 입체교차로로 시설하는 것이 더 합리적임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 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찬성의견 채택

6. 소수의견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8. 불임서류

○ 의견서 1부

부천시도시계획시설(교통광장)결정안에대한의견서

의안번호	제548호	안건명	부천시도시계획시설(교통광장)결정안에대한의견안
제 출 자	부천시장	의 결 연월일	제92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4차 본회의(2001. 12. 24)

부천시도시계획시설(교통광장)결정안에대한의견

오정대로의 교통운영 및 통행되는 차량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오정구청을 이용하는 민원인의 편리 및 통행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중로1류16호선의 종점부를 당초 오정동 103-10번지에서 오정동 119-39번지로 변경하여 오정대로와 접속하고, 오정대로 접속부에는 교통광장을 설치하여 동서 간 도로인 중로1류16호선과 남북 간 도로인 중로1류19호선은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원활한 차량통행을 도모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함

2001년 12월 24일

부 천 시 의 회 의 장

부천도시계획시설(교통광장)결정안에대한의견안

의안번호	제548호
의결년월일	2001. 12. 24 (제92회)

제출년월일 : 2001. 12. 6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관내 오정구 오정동 일원 오정대로의 교통운영 및 통행되는 차량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오정구청을 이용하는 민원인의 편리 및 통행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
- 중로1류16호선의 종점부를 당초 오정동 103-10번지에서 오정동 119-39번지로 연장 축소하여 선형변경하고 중로1류16호선 종점부에서 오정동 117-3번지 일원의 오정대로와 연결하는 오정대로 접속부에는 오정대로가 주간선도로임을 감안하여 교통광장을 신설, 입체교차로를 설치하여 원활히 차량통행을 도모코자 금회 도시계획결정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견을 듣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- 관내 오정구 원종동 166-4번지(대로2류5호선 : 원종로)~오정동 103-10번지(국도6호선 산업길) 구간을 연결하는 도로(중로1류16호선)에 대해 종점부 위치를 오정동 119-39번지로 연장 축소하여 오정대로와 연결하며,
- 금회 변경계획인 중로1류16호선의 종점부에서 오정동 117-3번지 일원의 오정대로 연결구간은 교통광장을 신설, 입체교차로를 설치하여 주간선도로인 오정대로와 접속하고자 도시계획시설(광장 : 교통광장)을 신설코자 함

□ 관련근거

-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라목

부천도시계획시설(교통광장)결정안

□ 도시계획시설(교통광장) 결정 조서(안)

구 분	시설명	세부시설명	위 치	면 적(m')			비 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 후	
신 설	광장	교통광장	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117-3번지 일원	-	중)42,341	42,341	

□ 결정사유

- 오정대로의 교통운영 및 통행되는 차량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오정구청을 이용하는 민원인의 편리 및 통행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
- 중로1류16호선의 종점부를 당초 103-10번지에서 오정동 119-39번지로 변경하여 오정대로와 접속하고, 오정대로 접속부에는 교통광장을 설치하여 동서 간 도로인 중로1류16호선과 남북 간 도로인 중로1류19호선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원활한 차량통행을 도모하고자 함

□ 참고사항

- 도시계획 용도지역·구역·지구 : 자연녹지지역, 개발제한구역, 최고고도지구
- 시행시기 : 2001~2006. 12월
 - ※ 중로1류16호선 시점부(원종로~동문아파트)는 도로개설사업 추진 중에 있음
- 시행자 : 부천시장(도로과)
- 광장시설 편입토지 현황
 - 소유자별 편입토지 현황

구 분	계	국유지(건교부)	시 유 지	사 유 지	비 고
면 적(m ²)	42,341	3,196	7,629	31,516	
필 지 수	93	18	35	40	
구성비(%)	100	7.6	18.0	74.4	

• 지목별 편입토지 현황

구 분	계	답	구거	도로	대지	전	잡	비고
면 적(m ²)	42,341	36,772	3,245	1,407	199	58	660	
필 지 수	93	62	22	6	1	1	1	
구성비(%)	100	86.8	7.7	3.3	0.5	0.1	1.6	

○ 추정 소요사업비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총 사업비	보 상 비	시 설 비	비 고
도로 및 광장	14,050	2,088	11,962	

○ 재원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(안)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총사업비	기투자	2001.	2002.	2003. 이후	비 고
계	14,050	2,289	3,000	4,000	4,761	
도 비	2,820	700		1,000	1,120	
시 비	4,230	1,589		1,000	1,641	
지 방 채	7,000		3,000	2,000	2,000	

○ 도시계획 결정권자

- 교통광장 : 경기도지사(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)
- 도로(중로 이하) : 부천시장(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)

□ 기대효과

- 도시기반시설인 도로·교통광장 확보로 시민편의 제공
- 도로연결체계 입체접속으로 차량통행 원활 도모

부천시도시계획 총괄도

(축척 = 1:50,000)

